성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7. .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548, 2006.6.23.개정 2006.6.24.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옥외광고업 등록에 따른 시설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고,

나. 성주참외산업특구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2006. 2. 28. 재정경제부로부터 지정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관련 조항이 개정(법률 제8018호, 2006. 10. 4.공포) 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 등 완화(안 제19조 제2항)

- 특구지역 내에서 특구 및 특화사업관련 홍보시설 광고물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지역 및 장소에 표시 가능

나. 특구지역 내에서의 옥외광고물 등 표시방법의 완화(안 제19조 제3항)

- 특구지역 내에서 특구 및 특화사업관련 홍보시설 광고물의 표시방법 완화

다.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안 제31조, 별표 1의2)

1)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옥외광고업 등록에 따른 구비요건 중 시설기준을 규정

가) 시설기준

(1) 옥외광고제작업 -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제곱미터이상 작업장

(2) 옥외광고대행업 - 연면적 6.6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

(3) 등록제 전환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자구를 신고에서 등록으로 수정

라.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규정(안 별표 5)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및 제4조, 제11조, 제20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제10조 및 제20조, 제41조, 제46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3조 및 제23조

나. 예산관련사항 : 해당없음

다. 기 타

1) 개정조례안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4) 협의사항 : 의견없음

5) 기타 참고사항

가) 도 새마을봉사과-3599(2006. 6. 30)호

나) 재정경제부 특구운영2과-57(2006. 2. 7.)호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특구법”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적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돌출간판”을 “5미터 미만이거나 1면적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돌출간판”으로 한다.

제19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특구법 제3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내에서는 특구 및 특화사업 관련 홍보시설의 광고물 등을 영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③광고물등의 표시가 미관풍치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저해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구내에서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특구내 참외홍보관련 시설을 조명함에 있어 네온, 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도로변에 표시하는 지주이용간판은 전광류를 이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지역 특구내 특화사업관련 지주이용간판 상단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등) ①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2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군수는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제1항중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를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로 한다.

별표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4 및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⑦옥외광고업 신고번호”를 “⑦옥외광고업 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의2】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제31조제1항 관련)

지 역	시 설 기 준	
	옥외광고제작업	옥외광고대행업
성 주 군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	연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별표 4】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제34조제1항관련)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수수료	관 련 법 규	비 고
신 규	업소당	15,000	법 제17조제3항	
변 경	업소당	7,500	법 제17조제3항	

※ 옥외광고업의 변경신고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영 제41조제5항)
(1) 관할 구역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2) 업소명을 변경한 때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35조제1항관련)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금액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7만원
- 0.6~0.8제곱미터 이하		10만원
- 0.9~1.0제곱미터 미만		15만원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20만원
- 1.4~1.6제곱미터 이하		25만원
- 1.7~2.0제곱미터 미만		35만원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40만원
- 2.4~2.6제곱미터 이하		55만원
- 2.7~3.0제곱미터 미만		70만원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8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0.5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80만원 +10만원
(2) 그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4만원
- 0.6~0.8제곱미터 이하		6만원
- 0.9~1.0제곱미터 미만		8만원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10만원
- 1.4~1.6제곱미터 이하		15만원
- 1.7~2.0제곱미터 미만		25만원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30만원
- 2.4~2.6제곱미터 이하		35만원
- 2.7~3.0제곱미터 미만		45만원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0.5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50만원 +5만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금액
나. 현수막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5만원
- 1.1~2.0제곱미터 이하		7만원
- 2.1~3.0제곱미터 미만		8만원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10만원
- 3.8~4.4제곱미터 이하		13만원
- 4.5~5.0제곱미터 미만		15만원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20만원
- 6.1~8.0제곱미터 이하		30만원
- 8.1~10.0제곱미터 미만		35만원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50만원 +10만원
(2) 지주·지정게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5만원
- 1.1~2.0제곱미터 이하		7만원
- 2.1~3.0제곱미터 미만		8만원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10만원
- 3.8~4.4제곱미터 이하		13만원
- 4.5~5.0제곱미터 미만		15만원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20만원
- 6.1~8.0제곱미터 이하		30만원
- 8.1~10.0제곱미터 미만		35만원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50만원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10만원
(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5만원
- 1.1~2.0제곱미터 이하		7만원
- 2.1~3.0제곱미터 미만		8만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금액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10만원
- 3.8~4.4제곱미터 이하		14만원
- 4.5~5.0제곱미터 미만		16만원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20만원
- 6.1~8.0제곱미터 이하		30만원
- 8.1~10.0제곱미터 미만		35만원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50만원 +10만원
(4) (1) 내지 (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장당 5천원 이상 3만원 이하	
(1) 일반 광고내용		장당10천원
- 1~10장이하		장당13천원
- 11~20장이하		장당20천원
- 21장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이하		장당10천원
- 11~20장이하		장당18천원
- 21장이상		장당22천원
라. 전단	·장당 3천원 이상 3만원 이하	
(1) 일반 광고내용		장당5천원
- 1~10장이하		장당8천원
- 11~20장이하		장당10천원
- 21장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장당10천원
- 1~10장이하		장당18천원
- 11~20장이하		장당22천원
- 21장이상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금액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가. 30일미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10만원
나. 30일이상 90일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30만원
다. 90일이상 180일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0만원
라. 180일이상 1년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00만원
마. 1년이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00만원
3.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25만원
나. 연 2회 위반자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45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100만원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소수점이하까지 계산하되, 계산된 총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입간판 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 등은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특구법"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서 군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명시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①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①----------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영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적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돌출간판**	2.---------- ---------- **5미터 미만이거나 1면적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돌출간판**	소형돌출간판 일부가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완화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표시방법 등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9조(표시방법 등의 완화)** ①----------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신 설>	② 특구법 제3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법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내에서는 특구 및 특화사업 관련 홍보시설의 광고물 등을 영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특구지역내의 특구관련 홍보를 위해서 옥외광물등의 표시설치의 허가신고 기준과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신 설>	③ 광고물등의 표시가 미관풍치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저해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구내에서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특구내 참외홍보관련 시설을 조명함에 있어 네온, 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도로변에 표시하는 지주이용간판은 전광류를 이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지역 특구내 특화사업관련 지주이용간판 상단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 간판면적의 합계 면적은 150㎡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군수는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등) ①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2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을 영업내용 및 지역특성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군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34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2,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3,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4와 같으며, 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별표4 제목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	**제34조(수수료)** ①----------옥외광고업 등록제 전환에 따른 자구수정-----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 ----------. ② **(현행과 같음)** 별표4 제목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	옥외광고업 등록제 전환에 따른 자구수정